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88442 판결 [주식매수 청구대금]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최성진, 김희성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 채권자 ’ 는 ‘ 원고 ’ 로, ‘ 채무자 ’ 는 ‘ 피고 ’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이균철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채권자는 고양시에서 가방 등 가죽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재직 중인 자이고, 채무자는 ㈜D(구 E), ㈜F 등의 각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소갑제1호증), 겉으로는 알루미늄 시스템 비계(飛階)[1] 특허를 활용한 유능한 사업가라고 칭하지만 실제로는 전문적으로 돈을 투자받은 뒤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2.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권자는 2019.초경, G 후원회의 회원이었던 신청외 H, 배우 I의 소개로 채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유망한 사업을 하고 있는 괜찮은 사업가라고 소개받았고, 그러다보니 처음 소개받을 당시에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함께 식사하는 동안 채무자는 채무자가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하겠습니다)를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회사 지분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1) 건설, 건축 등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가설 발판이나,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사람이나 장비·자재 등을 올려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시설물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기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거래처 내역, 매출 계획, 제조공장 등을 소개하였고, 채권자와 친분이 있던 배우 I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도 하였습니다[2]. 그리고 주문은 많이 들어오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원자재 알루미늄 구매를 못하고 있어 상황이 어렵다면서 투자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만 받는다면 2019년 매출 계획은 약 15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투자를 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채무자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5% 지분 50,000주를 양도할 테니 3억 원을 투자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채권자는 이 사건 회사가 장래성은 있어 보이더라도 현재 매출액(정확한 매출액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대략 10억 원 정도라고 하였습니다)에 비하여 5% 지분에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로 의논한 끝에, 2019. 3.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이 사건 회사 5% 지분을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하고, 채무자가 장담하는 것처럼 이 사건 회사가 2019. 12.까지 100억 원 매출을 달성한다면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2020년이 되기 전까지 매출 목표 100억 원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처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이 그대로 주식 양수대금 전부가 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소갑제2호증 양수도계약서).

그리고 채권자의 투자 수익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1년

2) 실제로 신청외 I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소갑제5호증).

에 2,200만 원을 매달 1일에 분할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1년에 2차례 배당을 해 주겠다고도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또 채권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만약 컨설팅비가 2회 이상 연체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3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투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채권자도 이러한 조건에 모두 동의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모두 특약사항으로서 특약서에 기재되었습니다(소갑제3호증 특약서).

채권자는 약속대로 채무자에게 계약 당일인 2019. 3. 26. 3,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2019. 3. 30. 1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2019. 4. 9.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모두 지급하였습니다(소갑제4호증). 그리고 채권자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5%를 인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소갑제5호증 주주명부. 그러나 위 주주명부가 세무서에 신고된 정식적인 주주명부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후 채무자는 2019. 6.경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D'로 변경하였습니다(소갑제1호증 참조).

그런데 채무자는 그 후로 채권자와의 약속 대부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처음 2달 컨설팅비 약 200만 원을 각 지급한 뒤 컨설팅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약속했던 연 2회 배당 역시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계속 요구하였지만, 채무자는 그 후로도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실제 체결되지도 않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매출액이 급등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였습니다[3]. 그리고 계속 독촉하던 채권자를 달래기 위하여 한참 뒤인 2021. 9.경 미납 컨설팅비 중 일부를 준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한 차례 준 것이 전

3) 채무자는 J, K, L 등 널리 알려진 기업들을 거론하면서 계약이 진행 중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하였으나(소갑제6호증 내지 소갑제8호증), 채권자는 채무자의 위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부였습니다.

채무자는 2021.말경 채권자에게 약속된 컨설팅비 미지급 관련 일정이라면서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왔습니다(소갑제9호증). 그 내용은 2022. 2. 20.까지 미지급된 컨설팅비 50%를 지급하고, 2022. 4. 20.까지 나머지 50%를 지급할 수 있는데, 단 2021. 12.까지 미결제 납품대금 회수할 수 있다면 50% 선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약속을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2022. 2. 20. 약속대로 미지급 컨설팅비 50%를 줄 것인지 반신반의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연말연시 안부 문자는 물론 채무자에게 약속을 확인하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 보았으나, 그전까지 친근하게 대하던 채무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약속 날짜가 도래해도 돈을 전혀 입금해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독촉 전화를 하였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2. 3. 18.까지 기다려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 3. 18.에도 역시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채권자는 특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채권자는 채무자, ㈜E(현재 ㈜D)와 2019. 3.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소갑제2호증, 소갑제3호증).

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E 주식 50,000주를 채무자 보유 주식에서 양도하고, 채권자는 그 대가로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다만 2019. 9. 30.까지 ㈜E가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양수도대금은 150,000,000원으로 축소 변경되며, 나머지 150,000,000원의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③ ㈜E는 채권자와 2019. 4. 2.부터 시작하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연 22,000,000원을 매월 1일마다 안분하여 지급한다.

④ ㈜E가 채권자에 대한 컨설팅비용 지급을 2월 이상 연체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상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하며, 그 매수대금은 300,000,000원(주당 6,000원)으로 한다.

그리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E 주식 50,000주를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E는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주식 양수도대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E는 채권자에게 약속한 컨설팅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2022. 4. 현재 약 30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바, 채무자는 채권자가 보유한 ㈜D(=㈜E)의 주식 50,000주를 약정대로 주당 6,000원, 총 3억 원에 매수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에서 본 것처럼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므로,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